

2025년 1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차량용 요소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5년 1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2.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요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입되는 차량용 요소에 대해 중국산과의 수입단가 차액 일부를 지원

나. 지원기간 : 2025. 1. 1. ~ 6. 30.

- 지원기간 내 국내 통관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 지원

다. 지원대상

- 제3국산 차량용 요소에 대해 수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물량을 배정받아 지원기간 내에 수입한 기업
 - 기업이 수입계획(6개월 단위, 기업당 총 수요량의 30% 내외 권고)을 수립하여 사업참가 신청, 심사를 통해 지원물량(분기별) 배정 예정
 -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및 공공비축 참여기업에 지원물량 배정 우대
 - 분기별 배정 물량을 전부 이행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 정산 지급
 - * 불이행 기업은 차년도 지원물량 배정 불이익

라. 지원금액 : 지원단가(\$/톤) × 물량 × 환율

○ (지원단가)

- [제3국산 요소 수입단가 - 중국산 요소 기준단가(396\$)*] × 0.5

* 사업 공고일 전까지 무역통계 상 확인 가능한 2024년 중국산 공업용 요소(HSK 3102109000)의 평균 수입가격(무역통계 상 수입액/중량, 2024.1월~10월)

** 단, 지원기간 중 중국산 수출이 재개되어 기준단가와 실제 수입가격 간 차이가 과도한(20% 이상)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기준단가 재산정

○ (물량)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물량 중 차량용 요소수 직접 생산 또는 제조사로의 판매가 증명된 물량

○ (환율)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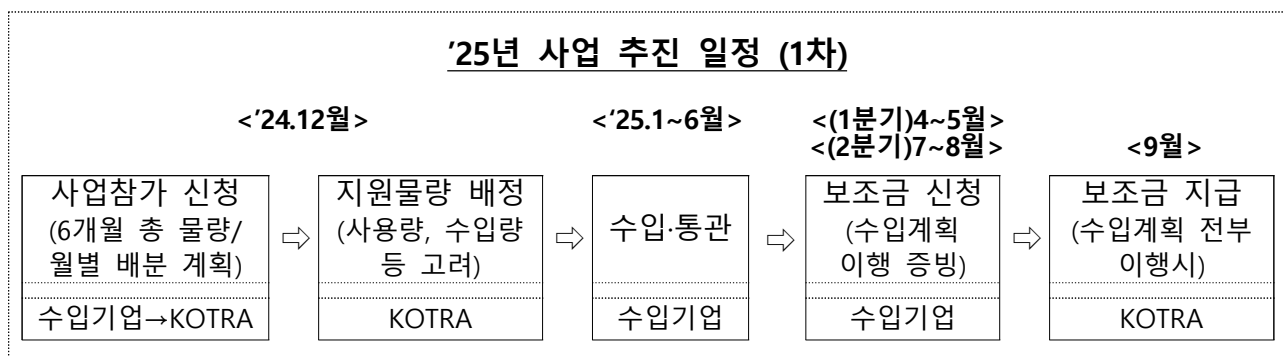
* 과세환율: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관세법 제18조)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이메일(gvc_biz@kotra.or.kr)로 신청 서류 제출

나. 신청기간 : '24. 12. 9.(월) ~ '24. 12. 20.(금) 18시까지

다. 진행 절차 및 일정



라.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양식
1	사업 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2	제3국산 차량용 요소 수입계획	서식 제2호
3	사용 인감계	서식 제3호
4	법인인감증명	
5	법인등기부등본	
6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서식 제4호
7	통장 사본	
8	사업자 등록증명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빙	
10	(차량용 요소 제조사의 경우) 자동차용 촉매제 검사결과서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마. 신청 제외 대상

- ◆ 산업통상자원부(관리기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이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3. 유의 사항

가. 유사 사업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나.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조치사항

-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동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4. 관련 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문의처

구분	담당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044-203-4937
운영기관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02-3460-7635

2025년도 제1차 사업 참가신청서

세 부 사 업 명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기업		기업명(부서명)			
		주 소		(☎ -)	
		홈페이지주소			
책임자	총괄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실무 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Tel	
		E-mail		Fax	
사 업 비 수 령 금 용 계 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신청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 지원금 신청과 관련,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바가 없음을 약속합니다.
3.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또는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가 취해짐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실무책임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제3국산 차량용 요소 수입계획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용 요소수 제조용 또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판매용 제3국산 차량용 요소 수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기업명					
2. 지원요청 물량(톤)					
3. 세부수입계획*		국가명	물량(톤)		물량(톤)
	1월			1분기	
	2월			2분기	
	3월			2분기	
4월			2분기		
5월			2분기		
6월			2분기		
4. 국내판매계획 (유통용인 경우)	'24년 판매실적 고려하여 제조업체명과 판매계획 물량 기재				
5. '24년(1~11월) 수입물량(톤)		6. '24년(1~11월) 차량용 요소수 제조실적(ℓ)			

* 세부수입계획 중 월별계획은 준수 권고사항이며, 분기별 계획은 의무 준수사항임

** 분기별 계획을 준수하여 지원물량을 전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 보조금 정산·지급

20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사용 인감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사 용 인 감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본인은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된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오며, 이 계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가. 은행명 :

나. 예 금 종 류 :

다. 계 좌 번 호 :

라. 명 의(예금주) :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1. 대표자의 인감은 반드시 서식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사용할 것
2. 계좌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통보할 것

[별표]

정산 시 제출 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공통	▶ 사업 정산신청서[서식 제5호] ▶ 수입·통관 관련 증빙 - 수입신고필증 - 상업송장(C/I 또는 P/I) - 패킹리스트(P/L)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수입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차량용 요소 식별 문구(예: automotive 등) 확인 예정 ▶ 외환송금 관련 증빙 - 수입대금 외국환 송금증 (은행)
추가	▶ 차량용 요소 식별자료(제조사) - 자동차용 촉매제 검사결과서 - 차량용 요소수 생산 자재명세서(B.O.M) ▶ 차량용 요소 식별자료(유통사) -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